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01회 임시회>

2011. 9. 2.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서 점 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I. 개요

1. 제출일 : 2011년 8월 26일

2. 제출자 : 김기석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안 제2조제2항)

- 7일 이내 → 9일 이내

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안 제9조의5제1항)

-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 제2조제2항)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며,
- 서류제출 거부나 선서의 거부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감자의 책임성확보는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신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u>7일 이내로</u> 실시 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u>9일 이내</u>. ----- ----- -----.</p>
<p>제9조의5(과태료 부과 징수) ① 제9조의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u>정당한 이유없이</u> 출석하지 않거나 <u>증언을 거부한 때에는</u>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9조의5(과태료 부과 징수) ① ----- ----- <u>정당한 이유없이</u> <u>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이유없이</u> <u>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u> ----- ----- -----.</p>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붙임 3)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8월 26일
2. 제 출 자 : 김기석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나.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및 신설(안 제2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범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외에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이 강화되어 행정의 감시·견제기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불임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3)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8월 26일
2. 제 출 자 : 정수현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현재 달성군 자치법규 용어 중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9조제2항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병”을 “감염병질환자”로 수정함.

5.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정의하는 바, “정신질환자”란 용어는 정신적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 통상 활용되고 있어,
-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로 비쳐져 “정신질환자”란 용어를 삭제하여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를 “감염병질환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u>전염병 및 정신질환자</u>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9조(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군수는 <u>감염병질환자</u>,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불임 3)

관계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돋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8월 26일
2. 제 출 자 : 정수현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현재 달성군 자치법규 용어 중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4조제2항제1호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성질환자”를 “감염병질환자”로 수정함.

5.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정의하는 바, “정신질환자”란 용어는 정신적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 통상 활용되고 있어,
-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로 비쳐져 “정신질환자”란 용어를 삭제하여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질환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u>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u> 2. ~ 3. (생략)</p>	<p>제4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감염병질환자</u> 2. ~ 3. (현행과 같음)</p>

붙임 3)

관계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협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둘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둘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8월 26일
2. 제 출 자 : 정수현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현재 달성군 자치법규 용어 중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5조제2항제1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전염성질환”을 “감염병질환자”로 수정함.

5.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정의하는 바, “정신질환자”란 용어는 정신적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 통상 활용되고 있어,
-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로 비쳐져 “정신질환자”란 용어를 삭제하여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질환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용자의 범위 등)</p> <p>① (생략)</p> <p>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p>1. <u>전염성질환</u> 또는 <u>정신질환</u>이 있는 사람</p>	<p>제5조(이용자의 범위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감염병질환자</u></p>

불임 3)

관계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돋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8월 26일
2. 제 출 자 : 정수현 의원(대표발의)
3. 개정이유

○ 현재 달성군 자치법규 용어 중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6조제1호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병질환자”를 “감염병질환자”로 수정함.

5.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정의하는 바, “정신질환자”란 용어는 정신적 장애인을 지칭하는 말로 통상 활용되고 있어,
-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적 요소로 비쳐져 “정신질환자”란 용어를 삭제하여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 ·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 ·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질환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u>전염병질환자, 정신질환자</u></p>	<p>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 ----- -----. 1. <u>감염병질환자</u></p>

붙임 3)

관계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돋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경제정책실)
3. 개정이유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통합 및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설립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시행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등에 명시(안 제3조~제9조)
- 다.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라.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 수립·시행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시설비, 경영,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제14조)
- 마.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및 조세감면사항 및 의무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제18조)
- 바. 우리군지역내 민간기업 등 사회적기업 자발적 참여 장려와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19조~제20조)

5.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제정안의 취지

- 사회적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지원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여,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함.

2. 제정안 타당성 검토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 예비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사회적기업 업무담당부서장인 국·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대구지방노동청의 추천을 받은 소속 공무원 1명

3. 사회적기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위촉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사회적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5조(우선구매의 촉진)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조세 감면)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

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민간기업 등 참여 확대) 군수는 달성군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제19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 모범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
3. 제정이유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다문화 가족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나. 조례로 규율하여 증가하는 달성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세대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 지원을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안 제4조)
- 다.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등 심의 자문을 위한 다문화가족협의회 설치(안 제5조)
- 라.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안 제13조)

5.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제정안의 취지

- 날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여,
- 다문화가족이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화합하여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제정안 타당성 검토

- 우리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번 조례를 제정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함이며,
-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들이 달성군민으로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함을 돋고, 동시에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달성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해외고향 방문 및 부모초청 지원
10.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정보화 마을 내에 화상상봉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상상봉 서비스 지원
11.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고향 우편운송비용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국장, 다문화가족담당 실·과장
2. 위촉직위원

- 가. 달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 나.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의 장
 - 라.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수당 및 실비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이 아닌 위원의 참석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나.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의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나. 기금 조성 재원의 종류에 식품위생법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추가(안 제2조제1호)

5.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등)
 - 제89조(식품진흥기금)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상위법이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 인용조항이 변경되었고,
알기쉬운 법령 용어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에 별다른 이견 없음.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를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식품진흥 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은”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2조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생행정담당이 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성군 각 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불임 2)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법 제7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⑤ (생 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생행정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
제8조(회의 등) ①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이 된다.	<삭 제>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성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

<p>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u>의한</u>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당해연도</u> 기금 사용계획 3. (생 략) 4. <u>기타</u>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 ② (생 략)</p> <p>③ 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u>대하여는</u>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따라</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해당연도</u>-----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 <p>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대해서는</u>----- -----.</p>
---	--

붙임 3)

관 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82조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6.7>

1.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제27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으로 식품위생검사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시행일 : 2011.12.8]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1.6.7>

1.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6.7>
-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82조제3항 ·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시행일 : 2011.12.8] 제83조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 · 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 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 · 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 · 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건설과장)
3.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 및 시 조례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사항의 변경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와 관련 법령과의 합치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점용료의 부과 대상에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포함 (안 제2조의3)
- 나. 점용료 산정기준 용어 변경 (안 제3조제2항)
- 다. 점용료 분할 납부 기준 신설 (안 제4조제2항)

5.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 개정안의 취지

- 「도로법 시행령」 및 시 조례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
사항의 변경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와 관련 법령과의 합치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2. 개정안 타당성 검토

- 점용료 부과 대상에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를 포함하였으며,
기존 허가자의 기존시설물을 대구시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
권장디자인(안)에 따라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허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점용료 산정기준인 “인접한 토지” 용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인접한 토지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조례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3) 관계법령 1부.

(
불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시설”을 “그 밖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4조제5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를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같은 호 후단 중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를 “부과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를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로, “당해 연도분”을 “해당연도분”으로,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지상 시설물	전주, 기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 차측정기, 우체통, 소화栓,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도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 매설물	송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 출 간 판을 포함 한다), 사설 안 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 와 유사 한 것	자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자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자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자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1,850
	자름 0.4m 초과 0.6m 이하			2,500
	자름 0.6m 초과 0.8m 이하			3,100
	자름 0.8m 초과 1.0m 이하			4,600
	자름 1.0m 초과 2.0m 이하			7,750
	자름 2.0m 초과 3.0m 이하			10,850
	자름 3.0m 초과			
4. 광고판 등	광고판,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은 제외 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 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5. 현수막 등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41,400
		기타		20,700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 주차장 · 여객자동차 · 차터미널 · 화물터미널 · 동차수리소 · 송강대 · 화물 적치장 · 휴게소 ·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인 건축물 4층 이상인 건축물 전 · 출입로 기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7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기 · 지하실 · 통로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기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 자동판매기 · 상품진열대 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 자동판매기 · 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 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기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년	150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 점포 · 창고 · 자동차주차장 · 광장 ·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주택 기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따라----- -----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 각 호의 어느 하나----- ----- 그 밖의 시설 -----.
1.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2.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 ----- 제28조제5항 ----- ----- 2. ----- 그 밖의 ----- 3.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그 밖의-----
제3조(점용료의 산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1. -----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부지는 제외한다)----- ----- -----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 -----.

<p>2. ~ 6. (생 략)</p> <p>7. [별표 1]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률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u>당해</u> 점용률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p> <p>8. (생 략)</p> <p>9.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u>경우에 한하여</u>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p> <p>제4조(점용료의 부과) ① 점용료를 <u>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u>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 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u>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한다.</u> <단서 신설></p> <p>③ ~ ⑤ (생 략)</p>	<p>2. ~ 6. (현행과 같음)</p> <p>7. ----- ----- <u>해당</u> ----- -----.</p> <p>8. (현행과 같음)</p> <p>9. ----- ----- <u>경우에만</u> ----- -----.</p> <p>제4조(점용료의 부과) ① ----- <u>부과할 때</u> -----.</p> <p>② <u>제1항에 따른</u> ----- ----- <u>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u> ----- ----- <u>해당연도분</u> ----- -----.</p> <p>- <u>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

<p>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u>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u></p>	<p>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3조에 따라----- -----해당연도----- -----. -----.</p>
<p>제6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6조(점용료의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재해 <u>기타</u>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u>기타</u>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u>기타</u>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그 밖의</u> ----- ----- <u>그 밖의</u> ----- -----. 3. ----- ----- ----- <u>그 밖의</u> ----- ----- -----.
<p>4. (생 략)</p> <p>제7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의 징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제7조(점용료의 징수) ①----- -----.</p>

<p>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u>하는 때</u>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p> <p>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u>당해</u>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p> <p>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u>기타</u>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p> <p><u><신 설></u></p>	<p>1. ----- <u>하는 경우</u> ----- -----.</p> <p>2. ----- <u>해당</u> ----- -----.</p> <p>② ----- <u>그 밖의</u> ----- ----- ----- -----.</p> <p>③ <u>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u></p>
---	---

붙임 3)

관계 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 ①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
2.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기타 이외 유사한 것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1년 8월 2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토지정보과장)
3. 개정 이유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부담 경감과 이용률을 제고하며 농업인 부채경감 및 대민봉사 행정실천 환경을 조성코자 함.

4. 주요내용

- 농기계임대사업 보관창고 부지(토지)매입
 - 지 번 : 하빈면 무등리 1053
 - 면 적 : 1,620m²
 - 매입예상가격 : 140,000천원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붙 임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 1부.
2) 2011년도 관리계획대상 재산목록(변경) 1부.
3) 사진대지 및 위치도 1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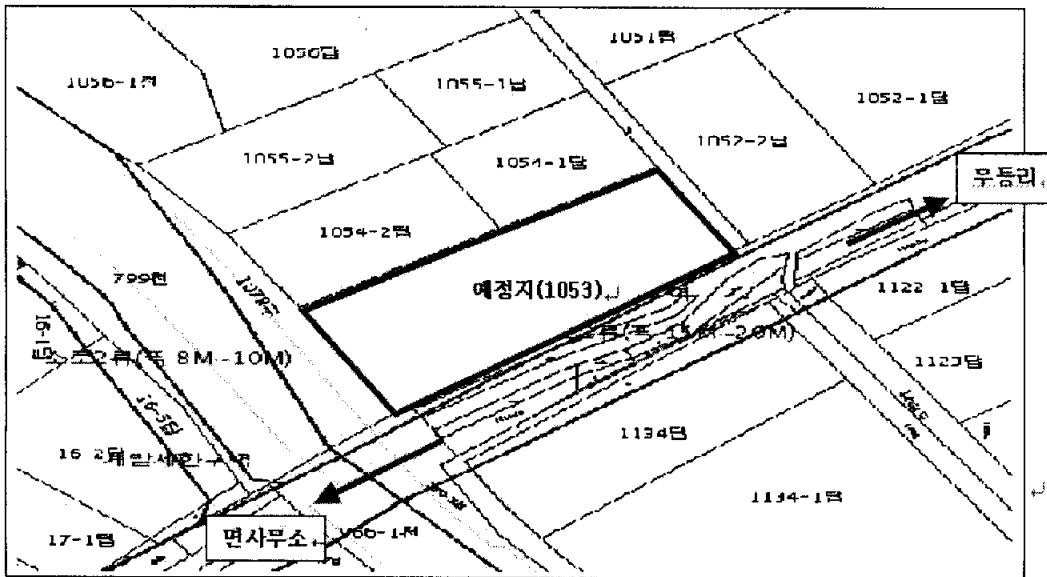
구 분		당 초			금 회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8	6,617	500,000	1	1,620	140,000
	1.매입 토지	8	6,617	500,000	1	1,620	140,000
	건물						
	2.교환						
	3.기타						
처 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2011년도 관리계획대상 재산목

연번	지목		재 산 의 표 시			일단의 수량 (m ³)	취득 (처분) 대상 수량 (m ³)	기준가격 (공시지가/원)	취득 (처분) 시기	취득 (처분) 사유	
	공부	사실	소 재 지								
계						6,617					
1	답	답	구지	오설	753	371	371	36,800	2011	낙동강레포츠 밸리조성	달성군 418
2	답	답	구지	오설	754	1,147	1,147	38,600	"	"	달성군 45
3	답	답	구지	오설	755	1,100	1,100	38,600	"	"	달성군 128
4	답	답	구지	오설	756	962	962	38,600	"	"	달성군 372
5	답	답	구지	오설	757-4	717	717	46,500	"	"	달성군 362
6	답	답	구지	오설	764-2	409	409	44,500	"	"	달성군 407
7	답	답	구지	오설	765	741	741	39,600	"	"	달성군 339
8	답	답	구지	오설	766	1,170	1,170	43,700	"	"	경남 김해 671-9
9	답	답	하빈면	무등리	1053	1,620	1,620	45,300	2011	농기계임대 사업보관장고 신축	수성구 1090-65 운107동

위 치 도

○ 하빈면 무등리 1053번지



○ 위성사진



II. 검토의견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농기계창고 신축예정 부지인 하빈면 무등리 1053번지 1,620m²(약 490평)의 부지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입지이며,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과 이용률을 제고하며 농업인 부채경감 및 대민봉사 행정실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

붙임 1) 관계법령 1부.

붙임 1)

관 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열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8.4.18, 2008.12.31>
1. ——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생략

[달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 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